
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9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「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9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생략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3. 17.~2025. 4. 7.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7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8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9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
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장애인”을 “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”으로, “비영리법인이나 단체”를 “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운영할”을 “운영하게 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 유 정
	팀장 직위·성명	복지시설팀장 구 선 미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문 병 권 (031-790-5596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위탁운영) ①시장은 보호 시설을 <u>장애인</u>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<u>비영리법인</u>이나 <u>단체</u>에</p> <p>위탁하여 <u>운영</u>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에 대하여도</p> <p>이 조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9조 (위탁운영) ①-----</p> <p>-- <u>효율적으로 운영 · 관리</u>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장애인</u> ----- <u>사회복지법인</u>이나 <u>비영리법인</u>-----</p> <p>----- <u>운영</u>하게 할 --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